

의안번호	2220115
의 퇴 인	임종득의원
회 답 일	2026.9.3.
추 계 번호	26C3709

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6조 (재정지원)	○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의 응급의료기관에 대하여 응급실의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음(제4항) ○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의 응급의료기관 또는 응급환자에 대하여 장거리 이송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음(제5항)	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16조 (재정지원)	○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□ 재정지원(안 제16조)

-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의료취약지의 응급의료기관 또는 응급환자 장거리 이송에 대하여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규정하는 것으로, 재정 지원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- 다만,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재정 지원 대상, 지원 규모 및 방법 등이 전제되어야 하나, 개정안은 재정 지원에 대한 내용을 선언적·권고적으

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존 사업의 확대 및 신규 사업 수행에 따라 실제로 집행될 지원금액을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

- 현재 보건복지부는 “응급의료이송체계 지원” 사업¹⁾에 따라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영지원, 의료취약지 헬기 착륙장 건설, 중증응급환자 이송체계 운영지원 및 응급환자 이송체계 관리 등의 내역사업을 수행하고 있음
- 또한, 일부 지방자치단체²⁾는 자체 조례를 통해 응급차량 이용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고 있으므로, 법적 근거 마련에 따라 신규로 집행될 국가 지원과 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지급 여부 및 지원 수준 등을 예측하기 곤란함

-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

Ⅲ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임슬기	문지은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임슬기	02-6788-4740	sg.lim@assembly.go.kr

1) 2026년 기준 예산 263억 7,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, 내역사업별로 지방자치단체 보조율 50~70%를 적용하고 있음

2) 강원특별자치도, 공주시, 김천시, 문경시, 삼척시, 서천군, 양구군, 영광군, 울릉군, 익산시, 인천광역시, 태백시, 파주시, 횡성군